

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언론 분쟁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이다. 분쟁 당사자 간에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언론분쟁의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의 원인과 쟁점을 파악한 후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결정 선례를 참고로 하여 분쟁 당사자 모두가 대체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들어서 열의와 인내심을 가지고서 설득한다. 그 과정에서 최초의 조정안은 변경되거나 수정을 거칠 수도 있다. 조정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조정안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불성립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합의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구분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다.

언론 분쟁의 조정자인 중재위원이 위와 같이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자로서의 공명정대성, 기밀성, 정직성, 전문성 등의 인간적인 덕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조정 기법을 연구하고 숙련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 조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상의 요구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 내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헌법상의 요구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명칭이나 조문의 내용상 언론 기관 등의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으로는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보다 개인의 권리구제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종종 보게 된다. 개인의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언론 기관 등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법원의 누적된 판결에 의하여 일응의 기준은 세워져 있다고 본다. 즉, 대법원판결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

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따라서, 보도 내용의 본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엽적인 표현상의 문제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보도에 대하여,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빈번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중재위원으로서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주된 원칙으로 삼아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2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안목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언론조정실무가이드, 언론중재위원회, 2009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0
- 유익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례 검토, 2010.
-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보고, 언론중재위원회, 2011

【별첨자료 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구 분		사 건 수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2008	서 울	607(63.6%)	268(44.2%)	36(5.9%)	68(11.2%)
	지 역	347(36.4%)	134(38.6%)	16(4.6%)	57(16.4%)
	소 계	954(100%)	402(42.1%)	52(5.5%)	125(13.1%)
2009	서 울	1,173(74.6%)	366(31.2%)	88(7.5%)	49(4.2%)
	지 역	400(25.4%)	172(43.0%)	17(4.3%)	39(9.8%)
	소 계	1,573(100%)	538(34.2%)	105(6.7%)	88(5.6%)
2010	서 울	1,627(73.8%)	361(22.2%)	128(7.9%)	76(4.7%)
	지 역	578(26.2%)	269(46.5%)	21(3.6%)	81(14.0%)
	소 계	2,205(100%)	630(28.6%)	149(6.8%)	157(7.1%)

〈최근 3년간 부산중재부 조정사건 처리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사 건 수	피해구제율	사 건 수	피해구제율	사 건 수	피해구제율
위원회 전체	954	72.9%	1,573	73.9%	2,205	79.2%
부산중재부	24(2.5%)	34.8%	15(1.0%)	85.7%	59(2.7%)	55.2%

【별첨자료 2】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중재빈도 및 법원 인용빈도 비교〉

연 도	위 원 회		법 원	
	전체건수	조정중재빈도	전체건수	인용빈도
2008	324	41(12.7%)	96	50(52.1%)
2009	699	50(7.2%)	115	54(47.0%)
2010	773	32(4.1%)	123	33(26.8%)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 중재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연도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2008	조정액	32	3,331,250	2,750,000	1,000,00	300,000	10,000,000
	중재액	9	2,322,222	2,000,000	2,000,000	900,000	4,000,00
	법원인용액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2009	조정액	40	3,594,103	2,000,000	3,000,000	120,000	30,000,000
	중재액	10	1,630,000	1,750,000	1,000,000	1,000,000	2,500,000
	법원인용액	54	23,484,499	8,000,000	5,000,000	10	272,881,472
2010	조정액	30	1,832,759	1,000,000	1,000,000	150,000	15,000,000
	법원인용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자동소제기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연 도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원회 결정액	법원 인용액	결정액 대비인용액 증감
2008	학 ○ ○	교육희망	1,000,000	0	▽1,000,000
	○○○산후조리원	MBC	1,000,000	1,000,000	동일
	박 ○ ○	MBC	7,000,000	6,000,000	▽1,000,000
	정 ○ ○	MBC	10,000,000	10,000,000	동일
	김 ○ ○	함평신문	10,000,000	3,000,000	▽7,000,000
	이 ○ ○	프런티어타임스	15,000,000	10,000,000	▽5,000,000
2009	김 ○ ○	MBC	5,000,000	5,000,000	동일
2010	박 ○ ○	동아일보	3,000,000	0	▽3,000,000
	전 ○ ○	MBC	1,000,000	1,000,000	동일
	이 ○ ○	연수송도신문	10,000,000	10,000,000	동일
평 균			6,300,000	4,600,000	▽1,700,000